

수신자 : 전국 사회복지기관장

(경 유)

제 목 :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상품 안내

1.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 기관입니다.
3. 2013년 7월 1일부터 전국 사회복지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상품을 선착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업내용 :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년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하는 국가사업

나. 지원대상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0만 명 (선착순)

1)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기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

※ 계약체결(공제회↔대표자), 피보험자(종사자)

다. 공제(보험)료 : 1인 당 연 2만원 (정부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1) 자부담 1만원은 보조금으로 기관운영비에서 집행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의 '사무비-인건비-기타 후생경비' (붙임 복지부 공문 참고)

라. 참고사항

1) 문의 : Tel. 02-3775-8899(ARS 1번)/ www.kwcu.or.kr

2) 방문설명회 실시 : 더욱 세부적인 설명을 듣기 원하는 기관에서는 붙임자료 '방문설명회 요청서' 작성 후 공제회 발송

-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2.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상품 안내.
3. 방문설명회 요청서 (총5장). 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팀장 김혜미 사무총장 이성선 이사장 조성철

합의 시행 한사공-2013-공문발송-00059호 (2013.9.3) 접수 (.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제일빌딩 8층 / 홈페이지 : www.kwcu.or.kr

전화 02)3775-8899 / 전송 02)6918-6111 / 이메일 kwcu8899@gmail.com / 공개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단체상해보험 국고지원 재안내

1. 우리 부는 ‘13.7.1일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지원사업(’13년 추경예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법인·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등)

나. 지원내용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험료 50% (1만원) 국고지원
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단체상해보험 상품 안내

○ 보험료 : 연령, 성별, 직군 구분없이 1인당 보험료 연 2만원 (국고 1만원 지원되므로 실제 자부담은 연 1만원)

○ 보장내용

보장내역	보상한도	보상금액
상해 임원의료비	2천만원	건당 2천만원 총액한도 없음
상해 통원의료비	25만원	건당 25만원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5만원	건당 5만원 180회 한도
상해 사망	3천만원	가입금액 전액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가입금액x장해율

※ 종사자 보험가입비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사무비→인건비→기타후생경비로 지출가능

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기타 상품 안내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1인 당 29,500원/(입소 시설) 정원 35명 기준 1,650,000원

마. 문 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T.02-3775-8899 / www.kwcu.or.kr).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계룡시장(주민복지과장), 공주시장(사회과장), 금산군수(주민복지지원실장), 논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당진시장(사회복지과장), 보령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부여군수(사회복지과장), 서천군수(사회복지과장), 아산시장(사회복지과장), 예산군수(주민복지실장), 천안시장(복지정책과장), 청양군수(주민복지실장), 태안군수(주민복지과장), 홍성군수(주민복지과장), 경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경주시장(복지정책과장), 고령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구미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위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봉화군수(주민복지과장), 상주시장(주민복지과장), 안동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영덕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양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시장(사회복지과장), 영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 울릉군수(주민생활지원과), 울진군수(주민복지과장), 의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도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송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항시장(주민복지과장), 거제시장(주민생활과장), 거창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고성군수(주민생활과장), 김해시장(사회복지과장), 남해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밀양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산청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의령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진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창원군수(주민복지실장), 통영시장(주민생활복지과장), 하동군수(주민복지실장), 함안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함양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합천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진군수(주민복지과장), 고흥군수(주민복지과장), 곡성군수(복지과장), 구례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장(주민복지과장), 담양군수(주민복지실장), 목포시장(복지정책과장), 무안군수(주민복지실장), 보성군수(주민복지과장), 순천시장(사회복지과장), 신안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 여수시장(사회복지과장), 영광군수(주민복지실장), 영암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완도군수(주민복지과장), 장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진도군수(주민복지과장), 함평군수(주민복지실장), 해남군수(주민복지과장), 화순군수(주민복지과장), 고훈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군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제시장(주민복지과장), 남원시장(주민복지과장), 무주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부안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창군수(주민생활과장), 완주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익산시장(기초생활보장과장), 임실군수(주민생활복지과장), 장수군수(주민생활과장), 전주시장(생활복지과장), 정읍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시장(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흥군수(주민복지과장), 성주군수(주민복지실장), 창원시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도현수** 행정사무관 **윤태기** 복지정책과장 **최종균** 2013. 7. 2.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19 (2013. 7. 2.) 접수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가회동) 75 현대빌딩 보건복지 / http://www.mw.go.kr
부 140-2번지(10층)

전화번호 02-2023-8217 팩스번호 02-2023-8217 / dhs7101@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 안내

○ 공제(보험)료

- 자부담은 사회복지종사자 **1년에 1인 당 1만원**
- 자부담 1만원은 보조금으로 기관운영비에서 집행가능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사무비-인건비-기타 후생경비'

○ 보장사항

담보	보상한도	보상기준	비고
상해사망	3천만원	보상한도 전액	중복보상
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보상한도x장해율	
상해 입원의료비	2천만원	수술비 포함 건 당, 총액 한도 없음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상해 통원의료비	25만원	1년 간 외래 180회 한도	
상해 처방조제비	5만원	1년 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그 밖의 항목별 차감액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홈페이지) 참고**

- (ex) 고의로 인한 사고, 피공제자의 임신·출산·산후기 입원, 인공유산, 불임수술, 전쟁, 혁명, 전문등반, 치과·한방 통원치료, 의치, 보청기, 영양제 및 보신용 투약,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모개선 목적 수술 등

○ 산재보험과의 비교

산재보험	상해공제보험
· 업무 중 사고만 보상	· 업무와 관계없이 보상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도 24시간 담보)
· 보상처리 후 보험료 상승 가능	· 보상처리 후 보험료 상승 없음
· 가입자의 임금, 연령 등에 따라 보상금액 상이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정액보상 · 실손의료비 : 실손보상

○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www.kwcu.or.kr) → 메인화면(상해공제 신청)
 -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하단)가입신청 → 청약서 출력, 직인 및 대표자 날인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발송 (팩스 : 02-6969-9606)
 - 공제료 입금 (하나은행, 810-377588-99304,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신규신청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진행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방문설명회 요청서

기관 정보	기관명 (시설유형)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종사자 인원		기자재 구비여부	빔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주소			
방문 희망 일시	1순위	2013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2순위	2013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설명 내용	구분	단체장(담당자) 대상 미팅 <input type="checkbox"/> 종사자 대상 설명회 <input type="checkbox"/>		
	항목	※ 설명을 원하시는 주요 내용을 체크해주세요 (중복체크 가능) 공제회 설립경과 및 연혁 <input type="checkbox"/> 장기저축급여 사업 <input type="checkbox"/> 화재배상책임보험 <input type="checkbox"/>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 <input type="checkbox"/> 대출서비스 <input type="checkbox"/>		

★ 신청방법 : 위 내용을 작성 후 공제회에 메일 및 팩스 발송
 - (이메일) kwcu8899@gmail.com (팩스) 02-6918-6111

★ 주의사항 : 방문요청일 최소 7일 전까지 신청서를 발송해주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은 경우 공제회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기타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외홍보팀 김혜미 팀장 (02-3775-1685)

2013년 월 일
 신청인 :